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2일, 위성곤·배준영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위성곤·배준영의원)

현행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및 택시운송사업,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해운부문에서도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의 경우 버스, 철도와 같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육지와 섬 지역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64조제2항 및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개정안은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여객운송용선박에 대해 2027년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포인트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여객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며,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2%포인트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제3항).

현행 「지방세특별제한법」 제6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세 감면의 대상을 연안항로에 취항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및 연안항로에 취항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으로 정하고 있음. 개정안에서는 화물운송용 선박 외에 여객운송용 선박을 추가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내항여객선의 항로는 103개(일반항로 74개, 보조항로 29개)이고, 54개의 여객업체가 155척의 내항여객선을 운영중이며, 수송한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327만명임(일반 999만명, 도서민 328만명).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해서는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 세율의 1%포인트를 경감하고, 여객운송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경감함으로써 연안여객운송사업자들이 새로운 선박을 도입하고, 운행하는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연안여객선이 안전하게 운행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함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객선 운임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